

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632호 2010. 4. 12. (월)

공 고

○ 공고 제2010-271호 [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].....2

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 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일림마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4월 12일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

1. 제정이유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북구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2. 주요내용

-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총칙(안 제1조~2조)
-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(안 제3조~8조)
 - 육성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
-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22조)
 -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,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지원
 - 시설비 등 지원, 경영·재정지원, 우선구매, 조세감면 등
 -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및 홍보 등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생활지원과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325, FAX 219-733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